

농 촌 진 흥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지역농업특성화사업(○○,○○○ 명품화단지) 부가세 환급금 및
이자 미반환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화천군

내 용

화천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FTA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발굴 육성을 위하여 “2015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(○○, ○○○ 명품단지 조성사업)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」 제53조의3항에 따르면 “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”으로 하고 있으며,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」 제31조에 따르면 “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화천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(○○, ○○○ 명품단지 조성사업, 300백만원)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및 이자액 7,097,163원(부가가치세 7,093,540원, 이자액 3,623원)을 반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

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예산 7,097,163원을 반환하시고,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